

| | |
|------|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안전관리처-5440 |
| 보존기간 | 준영구 |
| 결재일자 | 2018.11.12. |
| 공개여부 | 공개 |

| | | | |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|
| ★대리 | 팀장 | 안전관리처장 | 경영전략본부장 | |
| | | | | |
| 협 조 | 팀장 | | | |
| | 팀장 | | | |
| | 산업안전국장 | | | |

2018년 4/4분기 산업재해 예방점검 실시계획

2018. 11.

2018년 4/4분기 산업재해 예방점검 실시계획

공단 사업장 시설물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유해 및 잠재위험요인을 사전 발견·조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관련근거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(안전관리자의 업무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(보건관리자의 업무)
- 2018년 안전보건관리 계획(안전관리처-490, '18.1.25)

점검개요

- 점검기간 : 2018. 11. 14(수) ~ 12. 16(월), 기간 중 23일
*일정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조정 가능
- 점검대상 : 월드컵경기장 등 13개 현업부서
- 점 검 자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안전관리처 | 최상훈, 도재영, 임아롬, 박훈 |
| 노동조합 | 이영재(명예산업안전감독관) |

※안전관리처장·시설안전팀장 수시점검

- 점검방법 : 점검보고서(Check List)(붙임2)에 의한 점검

점검 및 조치

○ 중점 점검내용

- 전 사업장 공통사항

- 전기 기계·기구의 접지상태 점검 및 근로자 유해·위험작업 요소
- 근로자 근무환경 및 휴게공간 실태점검
- 작업장 바닥, 계단 미끄럼방지 및 이동식사다리 등 관리상태 점검
- 전 분기 점검결과 지적사항(안전보호구 등)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 등

○ **점검결과 조치**

- 점검결과 시정·보완, 개선, 권고사항 등에 대해 해당부서에 조치요청
 - 다중이용시설 점검 시 도출된 사항은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우선 시정 요청 후 문서시달
 -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긴급사항은 현장 즉시 조치
 - 단기 조기조치 불가 사항은 조치이행계획서 작성·제출(→ 안전관리처)

□ **행정사항**

- 2018년 4/4분기 산업재해예방점검 계획 통보(전 부서)
- 2018년 4/4분기 산업재해예방 점검결과 통보
- 현장 방문 시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절차 관련 홍보자료 배포(안전관리처)
- 수범사례 발굴 시 타부서 전파
-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여비 지급(안전관리처)

- 붙 임 :**
1. 산업재해예방 사업장 순회점검 세부점검 일정 1부.
 2. 점검 보고서(Check List) 1부.
 3. 점검사진(양식) 1부.
 4.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절차 홍보자료 1부. 끝.

2018년 4/4분기 산업재해 예방점검 일정

| 점검일정 | 점검부서 | 사업장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11. 14(수) | 서울어린이대공원, 장애인콜택시운영처, 상수도지원처 | 어린이대공원, 대공원 차고지, 동부수도관리소 | |
| 11. 15(목) |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, 장애인콜택시운영처 | 월드컵경기장 및 수익시설 / 장충체육관 / 월드컵경기장 차고지 | |
| 11. 16(금) | 상가운영처 | 명동관리소(명동, 소공, 명동역, 회현, 남대문) | |
| 11. 19(월) | 상가운영처 | 을지로관리소(신당, 을지로, 을지입구, 시청광장, 인현) | |
| 11. 20(화) | 2018년 3/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| | |
| 11. 21(수) | 돔경기장운영처, 상수도지원처, 주차시설운영처 | 고척돔경기장 / 강서수도관리소(강서, 남부) / 천왕역공영주차장 | |
| 11. 22(목) | 상가운영처 | 강남관리소(강남역, 잠실역) | |
| 11. 23(금) | 상가운영처 | 강남터미널관리소 | |
| 11. 26(월) | 주차시설운영처 장애인콜택시운영처 | 차고지(중랑), 동부주차관리소(창동), 장애인콜택시(창동관리팀) | |
| 11. 27(화) | 도로관리본부 | 홍지문터널(사면포함) | |
| 11. 28(수) | 추모시설운영처, 상수도지원처 | 시립승화원 및 공원묘지 / 중부수도관리소(서부) | |
| 11. 29(목) | 도로관리본부, 상수도지원처 | 구룡터널(사면포함), 강남수도관리소 | |
| 11. 30(금) | 주차시설운영처, 상수도지원처 | 수도자재관리센터, 중부수도관리소(중부) | |
| 12. 3(월) | 추모시설운영처 | 서울추모공원 | |
| 12. 4(화) | 상가운영처 | 영등포관리소(영등포역, 영등포로터리, 영등포시장) | |
| 12. 5(수) | 상가운영처 | 종로관리소(동대문, 청계6가, 종각, 종로4가, 종로, 청계5가, 마전교) | |
| 12. 6(목) | 주차시설운영처 | 서부주차관리소(신방화, 개화역, 개화산역, 구파발), 차고지(강서) | |
| 12. 7(금) | 주차시설운영처 | 동부주차관리소(도봉산, 화랑대, 천호, 잠실) | |
| 12. 10(월) | 주차시설운영처 | 중부주차관리소(종묘, 세종로, 한강진), 서부주차관리소(용산) | |
| 12. 11(화) | 교통시설운영처 | 동대문지상상가, 훈련원주차장, 혼잡통행료관리소 | |
| 12. 12(수) | 총무처 상가운영처 | 청사(장애인콜센터, 교통상황실, 주차통합센터, 방재센터 등) 글로벌센터 | |
| 12. 13(목) | 청계천관리처 | 청계천, 유지용수관리소 | |
| 12. 14(금) | 공동구관리처 | 공동구(가락, 개포, 상계) | |
| 12. 16(월) | 공동구관리처 | 공동구(상암, 목동, 여의도) | |

※ 점검자 및 일정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조정 가능(안전관리처장 및 시설안전팀장은 점검기간 중 수시 점검)

점검 보고서(Check List)

- 점검일시 : 2018 . . . ()
- 점검현장 :
- 점검결과

| 점 검 내 용 | 점 검 결 과 | | |
|---|---------|-----|----|
| | 적정 | 부적정 | 내용 |
|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여부 -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시기·기록·보존여부 -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여부 등 | | | |
|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- 위험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여부 -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| | | |
| 안전보건관리규정 - 안전보건관리규정 최신화 및 게시 여부 - 작업장 안전·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| | | |
| 보호구의 지급 -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 여부 - 안전인증 미인증 보호구 사용 여부 | | | |
|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- 작업장 바닥, 창문, 출입구 설치 상태 - 옥내 통로, 가설 통로 및 사다리식 통로 설치상태 - 계단 미끄럼방지 등 관리상태 등 | | | |
| 기계, 기구위험방지 조치 - 회전축의 덮개 등 안전장치 설치상태 - 볼트·너트의 풀림 등 관리상태 등 | | | |

| 점 검 내 용 | 점 검 결 과 | | |
|---|---------|-----|----|
| | 적정 | 부적정 | 내용 |
| 폭발·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- 지하작업장 작업 시 안전조치 - 위험물 보관장소 주변 화기 등의 사용 여부 - 위험물 보관장소의 통풍 등 보관상태 | | | |
| 전기기계·기구 등의 위험방지 - 충전부 방호조치 여부 - 접시 상태 여부 - 누전차단기 설치여부 및 용량 적정 여부 | | | |
| 배선 및 이동전성 위험방지 - 배선 등의 절연피복 손상여부 -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선 관리 상태 - 통로바닥에 전선방치 여부 등 | | | |
| 중량물 취급 시 안전조치 -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시 조치사항 - 중량물 취급주의 포스터 부착 여부 | | | |
| 산업안전·보건교육 - 안전·보건교육 실시여부 · 정기산업안전보건교육, 특별교육 등 | | | |
|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비치 여부 -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비치여부 -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 컬러인쇄 여부 - 각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상태 여부 | | | |

2018 . . .

확인자 : (인)
 점검자 : (인)
 점검자 : (인)
 점검자 : (인)

점 검 사 진

| 사진번호 | 점검장소(위치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지적사항 : | |
| <i>135×85</i> | |
| 사진번호 | 점검장소(위치) |
| 지적사항 : | |
| <i>135×85</i> | |

산업재해 신청과 산업재해조사표는 다릅니다!

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**반드시** 작성!

1 산재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

- 3일 이상의 휴업재해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작성·제출해야 합니다.

※ 휴업이란 :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(1개월) 내에 일근 등으로 3일 이상
휴근하지 못한 것을 뜻함.

→ 법정공휴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하루일·가인호가 등 포함

※ 산재 발생 시 산재신청(오양급여신청 등)을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2 산재발생 시 반드시 안전관리처로 알려야 합니다

- 대 상 :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
- 절차 : 재해발생부서 → 안전관리처(감사실) →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
- 기 한 : 안전관리처로 유선보고(즉시) 및 사고보고서 제출(20일 이내)
- ※ 관련법 :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

3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시 과태료가 강화되었습니다

- 기 준 : 1차 300만원 / 2차 600만원 / 3차 1,000만원 / 거짓보고 1,000만원
- 개 정 : 1차 700만원 / 2차 1,000만원 / 3차 1,500만원 / 거짓보고 1,500만원

4 중대재해 발생보고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

-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개요, 피해상황, 조치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·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.